2013년 10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월30일(월) 14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/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	국조실 중기청 공통 **보 도 자 료**	작 성	**국조실** 경제규제3과장 권영상 (044-200-2418) **중기청** 벤처정책과장 이준희 벤처투자과장 박종찬 규제영향평가과장 조규중 (042-481-4383/4416/4555)

9.30(월) 14시 이후
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벤처 창업·금융 규제는 풀고, 해외진출 지원은 늘린다

- 창업·입지·투자 등 5대 분야 21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 -

▷ **청년 창업** 지원업종 **확대**, 「벤처글로벌 진출펀드」 1,500억 14년까지 신규 조성

▷ **벤처창업자** 대학·연구기관에 **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**, **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완화**

▷ 10% **기술료 단계적 인하 추진**, **중소기업 회생 절차 간소화** 14.9월까지 **법제화**

□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**「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」**을 9월 27일(金) **국가정책조정회의**(주재:국무총리)에서 **확정**, 발표

○ 이번 방안은 **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「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*」**을 **발표**한 이후, **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**

*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국조실의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ICT, 보건의료, 콘텐츠 등 9개 업종은 부처별 우선추진과제로 지정(6.25 국무회의 보고)

□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**도전적 창업 의욕**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

○ 현행 창업지원요건,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**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**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이 육성될 수 있도록 **투자 여건을 개선**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음

* 벤처기업 수 : '97년 2,042개 → '13년 29,336개 : 약 14.5배 이상 증가

*「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벤처비전 2017 전략」(벤처기업협회 '13.1월)

○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**34건**의 **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**를 **발굴,** 이중 **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**과 밀접한 **21건의 과제**를 **선별**하여 **개선방안**을 **마련**

*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, 중소기업창업지원법,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,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,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

□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"창업 지원", "입지환경 개선", "투자 활성화", "행정적 규제개선" 등 **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**를 확정하였음

○ 이는 금년 5월 발표된 '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'*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**일자리 창출****을 견인하는 **모멘텀**이 될 것으로 기대

* M&A 규제 완화, 세제지원 혜택 확대,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이 주요 내용

* 벤처확인기업(26,063개)의 총매출액은 183조원(GDP 대비 14.8%), 고용 인력은 664,607명(전체 고용의 4.7% 차지)으로 성장과 고용을 주도 ('11.12월말 기준)

1. 창업 지원

1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확대(중기청)

현행	○ 청년창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**제조·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 업종·사회복지서비스 업종**에 한해 **1억원 이내** 자금지원 * ('12) 5.076건 1,326억원 → ('13.8) 2,929건 987억원
개선	○ **지원대상 업종 추가 발굴**(예 : 전자상거래업, 관광관련서비스업 등) ▶「**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**」에 **반영**('14.1)

2 벤처 해외창업 지원(중기청)

현행	○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**해외이전 지원시책***은 있으나, 벤처기업에 특화된 **해외창업 지원책**은 **부족** *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·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융자
개선	○ 1천5백억 규모의 '**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**(가칭)' **조성** ('14년내) * 국내외 벤처캐피털, 투자전문운용사 등 참여, 해외판로개척, M&A 등을 밀착 지원 ⇒ **해외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 확대**(現 해외진출기업 중 직접진출은 6.7%)

3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벤처확인 절차개선(중기청)

현행	○ **기술혁신 중소기업***이 **인증획득 후 6개월 이내** 벤처기업 확인 신청시 **기술성 평가 면제** * **기술혁신 중소기업**: **기술혁신**을 주도하면서 **미래 성장 가능성**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**중기청**이 **인증** ('03.8, 17,198개) ** **벤처 확인 기업** : 기술평가 보증·대출 규모, 벤처캐피털 투자규모, 연구개발 비율 등을 평가 확인받은 중소기업(벤처캐피털협회,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신용보증기금)
개선	○ **기술성 평가 면제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** ⇒ **수혜대상기업이 매년 약 2,800개社로 추산** ▶ 「벤처기업 확인요령」 개정 (연내)

2. 입지환경 개선

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(중기청)

현행	○ **입주가능 기업**(벤처기업 등)**과 지원시설**(창투사, 은행 등)**의 제한적 허용**으로 **집적시설 확산 미흡** ('09. 86곳 → '12. 89) * 도심 빌딩에 벤처기업 집단적 유치, 지정시 세제혜택 등 부여
개선	○ **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, 벤처창업관련단체, 연구기관** 등 입주 허용 ⇒ **집적시설 지정 확대 및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 등** ▶「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**」및 **지침** 개정('14.4)

2 실험실 공장 설치요건 완화(중기청, 미래부, 교육부)

현행	○ 대학·연구기관 시설 내에 **교직원(학생)·연구원**이 **실험실** 공장* 설치시, 건축물 용도변경 등 특례적용('13.8, 43개) * 저공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(500㎡이내)을 갖춘 사업장
개선	○ **벤처창업자,** 대학·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**설치 허용** ▶「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**」개정 ('14.6)

3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(중기청)

현행	○ **신기술 창업전문회사*** 설립시, **대학·연구소**는 창업전문회사 **발행주식의 20% 이상 의무 보유**('13.8 15개社) * 대학·연구소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
개선	○ **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**(예시 : 10%, 연구용역 착수 '14.1) ▶「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**」개정('14.6)

3. 투자 활성화

1 **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**(중기청)

현행	○ 벤처 투자, 자문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서 성공한 **1세대 벤처기업가 활용 저조**('13.8, 100명 내외)
개선	○ 일정기준 이상의 **투자실적, 경력** 등을 보유한 **엔젤투자자**를 **전문엔젤**로 **지정**,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**벤처기업**으로 **확인** ▶「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**」개정('14.6)

2 **투자조합 출자금 하향 조정**(중기청)

현행	○ **개인투자조합 설립**은 **2억이상 출자,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**은 **30억원** 이상('13.8, 개인투자조합 : 90개, 창투조합 326개)
개선	○ **개인투자조합 출자금 1억원** 이상, **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금은 20억원** 이상으로 하향 ▶「**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**」개정('14.4) 「**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**」개정('14.6)

➡ 전문엔젤, 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 설립 확대

* 현재 벤처확인기업 중 벤처투자기업은 2%에 불과,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보증기업임

3 **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**(중기청)

현행	○ **한국벤처투자조합**은 △ 보유 투자지분 **유동화 애로**, △ 다른 투자조합 **지분 매입수단 부재**
개선	○ **타 조합 지분 매입 허용** ⇒ **출자지분 회수기간 단축, 펀드 조성 확대 가능** ▶「**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**」개정 (연내)

4. 운영 지원

1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(미래부, 중기청)

현행	○ 중소(벤처)기업에 대해 **정부출연금**의 **10%**를 **기술료**로 일률적 징수 * 정부 R&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기술료 상환에 부담
개선	○ **경상기술료제 도입확대 · 기술료 단계적 인하 추진** *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(중기청 1곳 이상으로 적용확대) ▶「**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**」개정('14.12)

2 벤처기업 再起 지원(법무부)

현행	○ 중소기업 **회생절차 규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** *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절차 단축 필요
개선	○「**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**」에 중소기업 **회생절차 간소화** 등 규정 新設 (*「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」운영 중) ▶「**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**」개정('14.9)

3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(중기청)

현행	○ 국내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(벤처)기업에 대해 기술 · 마케팅 **외국인력 채용**을 **지원**하고 있으나, **자격요건**이 **엄격** * 벤처 CEO 중 20 · 30대가 19.5%로 젊은 외국인력 채용 수요 * ① 박사학위자. ② 석사학위자 + 2년이상 경력, ③ 학사학위자 + 5년이상 경력, ④ 10년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 중 선발, 체재비 등 지원('12년 216명)
개선	○ ① 석사학위자 + **1년이상 경력**, ② 학사학위자 + **3년 이상 경력**, ③ **7년이상** 관련 경력 보유자로 **완화** ⇒ **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의 맞춤형 외국인재 영입 가능** ▶「**2014년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공고**」반영('14.1)

5. 행정적 규제 개선

1 창업지원 업종 확대(중기청)

현행	○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서 **창업지원 제외 업종***을 **규정·운영** * 창업지원 제외 업종 :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제조업 아닌 업종으로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
개선	○ 창업지원 **업종 확대 발굴**(업종분석 용역 착수 : '14.1) ▶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개정 ('14.6)

2 예비벤처 제도 개선(중기청)

현행	○ 기술성 평가를 거쳐 **'예비벤처' 확인**을 받은 자가 창업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 **기술성 평가**를 다시 받아야 함 *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준비 중인 자로서 법상 요건 충족자(現 57개)
개선	○ **예비벤처** 확인 후 1년내 창업하여 벤처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 면제 ▶ 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 개정 (연내)

3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(중기청)

현행	○ 출자금 40% **투자의무**를 **이행**했음에도 **1년 이상** 창업·벤처기업에 **투자한 실적 없으면 등록취소**('10~'12, 4개社 취소)
개선	○ 법령상 투자의무 이행시, **1년간 투자실적 없어도** 등록취소 **예외 인정 등 규제 합리화** ▶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개정 ('14.6)

※ 별첨 : 「벤처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」 중 기타분류 6건

□ 이와 관련하여 **정홍원 국무총리**는,

○ “관계부처는 금번 **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**되어 일자리 창출,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**법령을 신속히 개정**하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**점검**해달라” 고 **당부**

□ 국무조정실은 “이번 대책에 따른 **고시개정**, 사업공고 등은 **연내에 마무리**하고,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**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은** 당초 일정대로 **차질없이 추진**될 수 있도록 **지원**할 계획이며

< 법령개정 등 추진일정 >

구분	법률 개정	시행령 개정	고시 등 개정	사업성 과제
계	5건	9건	5건	4건
연 내*	1	-	4	3
14. 6월	3	8(3건 4월)	1(4월)	1
14. 12월	1(9월)	1	-	

* ’14.1월 사업공고 예정과제 포함

○ 아울러 개선과제가 **현장에서 제대로 이행**되고 있는지도 **「규제개혁민관합동 추진단」**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**집중 점검**할 예정” 이라고 밝힘

별첨	기타 과제 * 창업 투자 등 5대 분야에 속하나 중요도가 낮은 과제

1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제 네거티브 전환

○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요출자자 및 특수 관계인間 **모든 '거래'를 원칙적으로 금지** →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거래는 제한 이외 허용

▶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개정 ('14.4)

2 창투사 전문인력 인정 확대

○ 벤특법에 따른 유한회사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 경력자도 **창투사 전문인력으로 인정**

▶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개정 ('14.6)

3 모태조합 운영협의회 책임성 강화

○ **모태조합 운영협의회*** 관리·운용에 관한 **법적근거 마련**

* 중소기업진흥공단, 고용노동부 등 9개의 모태조합 출자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

▶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개정 ('14.4)

4 예비벤처 평가기준 개선

○ 기술성 평가 항목 이외에 **혁신성** 등 지표 도입

▶「벤처기업 확인요령」개정 (연내)

5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체계 개선

○ 운영성과 평가 및 사업비 지원 **(現) 매년 평가 → (改) 3년 누적 평가결과**를 반영하여 사업 안정성 제고

○ 평가에 따라 **사업비 차등 지원폭 완화** (80백만~20백만 → 60백만~40백만)

▶ 2014 기본계획 수립 ('14.1)

6 중기청장에게 등록한 지도사 등록취소 처분요건 강화

▶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개정 (연내)